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□ 지주회사 허용의 현실성

-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적인 요건을 발표했음
 - 부채비율 100% 이내인 기업
 - 30대 그룹의 경우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해야 가능
 - 하나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음
 -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% 이상 소유할 수 없음
- 금번 조치는 국내기업에게도 명시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한다는 의의가 있음
 - 국내기업에 대한 지주회사 허용 문제는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
 - 특히, 최근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현행법이 국내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“逆差別”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됨

<지주회사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전개 과정>

국내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은 원칙적으로 불허
 → IMF 사태 발생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주회사의 필요성 대두
 →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「구조조정 전문회사」에 대해서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(산업자원부)
 →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들어 허용 불가 주장(공정거래위원회)
 →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
 →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 발표(공정거래위원회)

- 일부에서는 금번 조치가 단순히 명목적으로만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
 -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부채비율 축소, 상호채무보증 해소 등의 조건은 단기간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,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“2000년 이후 지주회사 허용”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

(정 반석 bsjyoung@kri.co.kr ☎ 724-4045)